

인천지방법원 2020. 12. 9 선고 2020가단1616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주식회사 B(변경 전 : 주식회사 C)

2. D 주식회사(변경 전 : 주식회사 E)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0. 12. 9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주식회사 B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. 2. 1. 접수 제5484호로 마친
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,
나. 피고 D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. 2. 1. 접수 제5485호로 마친
근저당권부질권등기에 대하여
각 2020. 7. 24.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B는 2010. 2. 1. 접수 제5485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등기에 대하여

2020. 7. 24. 변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각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3. 각하부분 : 피고 주식회사 B는 2010. 2. 1. 접수 제5485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의 말소에 대한 '등기의무자'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규정한 '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'가 아니므로,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(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10173 판결 참조).

판사항지애

별지